

의료기기안전평가과 공무직 채용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223호) 제10조에 따른 의료기기안전평가과 공무직 근로자(심사원)를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가. 채용인원 : 총 5명 (심사원 라급 5명)

나. 자격요건

채용분야	인원	수행 업무	응시 자격
심사원 라급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품목별, 분야별 갱신 검토: 의료기기 갱신 신청 시 제출되는 자료의 접수 및 검토, 처리 등에 관한 사항갱신제도 관련 사전상담갱신 도래 사전 알림(분기별 사전알림 대상 확인 및 우편발송 등)의료기기 품목갱신 결과 엑셀 파일 정리 및 통계관리품목갱신 결과에 따른 현장 조사 필요성 검토 및 조치갱신에 관한 질의사항 등 민원 응대(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 연구 실적이 있는 자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 예정분야의 경력·연구실적이 있는 자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p>[관련분야]</p>

채용분야	인원	수행 업무	응시 자격
			전기·전자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컴퓨터공학, 통계학(의학, 생물, 응용), 전자계산학과, (응용) 물리학, 의과(공)학, 생체공(재료)학, (생)화학, 화(공)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무기재료학, 물리학,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고분자공학, 금속공학, 신소재공학, 제어계측공학, 전파공학, 치과(학), 임상병리학, 수의학, 치과기공학, 치과위생학, 방사선학, 물리치료학 등 유사 분야 전공자

다. 공통사항(면접일까지 지원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라. 우대사항

-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자, 국가유공자
- * 장애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5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2. 보수 및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직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근무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라 향후 근무지가 변동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4조(전보)

① 총괄부서의 장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를 실·국 또는 소속기관 내 다른 부서로 전보하거나, 다른 실·국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전보할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전보예정자가 전보예정직무의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

다. 계약기간

- 채용계약일로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회계연도 기준)

※ 근무성적평가 등에 따른 재계약 가능(계속 근로기간 2년 경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라. 근무시간 : 주 40시간

마. 보수(연봉) ('24년도 기준)

구 분	월기본급
심사원 라급	2,158,330원

* 급식비(매월 14만원),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6개월 이상 근무 시) 별도 지급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구비서류 및 전형일정

가. 전형일정

- 접수기간 : '24. 2. 7.(수) ~ 2. 23.(금) 시까지

- 접수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s://employ.mfds.go.kr>)에 접속하여 접수(온라인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응시분야와 응시등급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나. 제출서류

구분	내용
공통서류 (필수제출)	- 응시원서(시스템 입력) - 자기소개서(시스템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초본(남·녀 공통,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 수료 및 수료예정 증명서 미인정 - 성적증명서(대학 이상 최종학력까지)
선택서류 (해당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인정 - 기타 면허(자격)증 사본(운전면허 제외) - 연구목록 등 기타 증빙서류 - 어학성적서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다.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에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 되지 않음
- 파일 오류 및 암호 설정으로 열람이 불가하여 심사가 어려운 것은 **본인 책임으로 함**
- 학력·자격 등은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은 **공고 마감일까지 인정하여 심사**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출신학교, 출생지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 후 제출**
- 최종학력 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이력서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시험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원본 그대로 스캔 후 제출

라. 면접시험 주의사항

- 면접시험 시작시간 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
 - 1차 합격자 발표: '24. 2. 27.(화) 예정
 -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 면접시험

- 채용분야 적합성, 전문가로서의 능력, 업무수행태도 등에 대한 심사
 - 면접시험 예정일: '24. 2. 29.(목) 예정
 - * 면접시험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개별 통보)

다. (최종) 합격자 발표: '24. 3. 5.(화) 예정

-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 채용
- ** 합격자 계약은 신원조사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임

5. 기타 참고사항

- 가. 제출된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사실조회를 통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다.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분야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9)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